



제273회 정례회
2008. 7. 14

전문위원 검토보고

-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

교육사회전문위원

- 충청북도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-

검 토 보 고

□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□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8년 6월 30일
- 회부일자 : 2008년 7월 7일

□ 제안 이유

- 감사원 등에서 지역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에 대한 객관성 확보방안 마련 등 권고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'시·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준칙(안)'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임

□ 주요내용

- 가. '학교설립예정지'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학교의 건·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도록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 심의사항을 추가 함.(안 제3조)
- 나. '위원의 자격'을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의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, 「학교보건법」 제6조제1항의 금지행위 등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 함. (안 제6조)
- 다. '위원의 의무'에 회의참여, 정보누설 금지, 지위의 남용과 재산상의 권리, 이익 취득 및 알선 금지를 정함.(안 제7조)

- 라. '위원의 자격상실'을 의무 미이행, 공무원 위원의 그 직위 상실, 학교운영위원의 신분 상실, 연속 3회 이상 회의 불참 시로 정함.(안 제8조)
- 마. '회의록'에 개최일시와 장소, 출석위원의 성명과 대표위원의 서명, 심의안건과 심의내용, 위원들의 주요 발언요지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정함.(안 제11조)

□ 검토 의견

○ 동 전부개정 조례안은

- 교육과학기술부(前 교육인적자원부)에서 지난 2008년 2월 5일 시·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준칙(안)을 각 시·도별 교육청에 시달하면서 현행 조문을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 조례안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.

<준칙안을 시·도교육청에 시달한 동기>

- 국무조정실에서 시도별 각 지역교육청에 설치 운영중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에 대한 객관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있었음.
- 그리고, 감사원 감사결과 시·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상의 문제점 등이 지적됨에 따라
⇒ 교육과학기술부(前 교육인적자원부)에서 준칙(안)을 마련하게 된 것임.

※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-622(2008.2.5)

- 다만, 제6조에서 위원의 자격을 규정한 「국가공무원법」 적용과 관련, 법률적 하자는 없지만 충청북도교육청을 감안하면, 「지방공무원법」으로 적용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.

붙임 :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.